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7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년7월22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중화)

제안이유

- 상동 신도시의 입주와 연립주택의 호별 검침에 따라 수도전이 53,000전에서 75,000전으로 약 42%의 증가가 되고 있어 검침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상수도 요금의 납기 마감일을 20일, 말일, 익월10일을 말일로 조정함(안 제 31조 제1항)
- 상수도의 요금부과 업무중 수도계량기의 검침, 점검, 고지서송달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의2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이 요금의 납부 마감일을 20일, 말일, 익월 10일로 하던 것을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을 말일로 개정을 하고, 수도계량기의 검침 위탁을 현행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검침, 점검, 고지서의 송달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닌가?</p>	<p>○ 예</p>
<p>○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느정도 할 계획인가?</p>	<p>○ 수도전수로 약 23,000전 정도임.</p>
<p>○ 현재 검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,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인원은 어느정도 인가?</p>	<p>○ 현재 검침요원은 22명이며, 민간 위탁시 소요되는 인원은 격월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10명정도 예상하고 있음.</p>
<p>○ 수도전이 53,000전에서 75,000전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75,000전으로 예상하는 것 인가?</p>	<p>○ 예 6월말 현재 13,000전이 접수 되어 있음.</p>
<p>○ 민간위탁시 직원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인가?</p>	<p>○ 시에서 민간업체에 계약시 수도 전으로 1,000~1,200원정도로 계약을 하는데 급여는 얼마를 줄지 모르겠음.</p>

질 의	답 변
<p>○ 검침업무는 어떻게보면 단순업무임. 10명이 필요한 인원을 임금을 적게해서 고령자 또는 부녀자를 30여명으로 고용해서 한다면, 부천시의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?</p>	<p>○ 좋은 생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.</p>
<p>○ 늘어나는 수도전수가 상동신도시만 인가?</p>	<p>○ 부천시 전체임.</p>
<p>○ 현행 조례 제43조의2 제2항에 법인에게 위탁시 법인은 자본금 1,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?</p>	<p>○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자본금의 규정이 무의미해서 삭제 하는것임.</p>
<p>○ 민간에 위탁시 예산의 절감을 어느정도 보는가?</p>	<p>○ 7%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.</p>
<p>○ 만약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?</p>	<p>○ 민간위탁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것도 검토를 한 사항이나 공단에서 업무가 동떨어진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.</p>
<p>○ 현행조례로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개정하는 이유는?</p>	<p>○ 조례의 제31조 사항인 납기와 징수방법을 개정하면서 제43조2 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개정하는 것임.</p>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9호
의결 년월일	2002. 7. 24 (제98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2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상동 신도시의 입주와 연립주택의 호별 검침에 따라 수도전이 53,000전에서 75,000전으로 약 42%의 증가가 되고 있어 검침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상수도 요금의 납기 마감일을 20일, 말일, 익월10일을 말일로 조정함.(안 제31조 제1항)
- 상수도의 요금부과 업무중 수도 계량기의 검침, 점검,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의2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중 “매월 월납으로”를“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”로 하고 “20일, 말일, 익월10일로”를“말일로”로 한다.

제43조의2제1항중 “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.”를“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의 점검, 점검,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”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1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 일을 20일, 말일, 익월10일로 하여 징수한다. 다만,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1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---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----- 말일로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3조의2(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)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,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43조의2(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)①----- -----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도·계량기의 검침, 점검,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</p> <p>②<삭제>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